

제17조 (보칙)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1년 4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8년 11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92년 11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【 13 】 휴회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11. 6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1993년도 행정사무감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함.

제안이유

감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함.

【 14 】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2

제 출 자 : 행감특위원장

제안이유